

---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

2013. 8. 8.

기획재정부

# 순 서

I. 의의 및 현황 .....	1
II.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	5
III.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	6
IV. 세목별 조세정책 운용 방향 .....	7

# I. 의의 및 현황

- ◇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조세정책(tax policy)의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
  -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시계(視界) 하에서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
  - 새정부의 ‘희망의 새시대’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마련

## 1. 조세부담률 및 조세구조

- (조세부담률) '07년 21%까지 증가했던 조세부담률은 점차 하락하여 '12년 20.2%(잠정)로 OECD 평균(24.6%, '10년)보다 낮은 수준
  - 국민부담률은 '12년 26.8%(잠정)까지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OECD평균 33.8%, '10년)
    - ※ 사회보장부담률(%): ('90)2.0 ('96)2.7 ('02)4.4 ('08)5.8 ('11)6.1 ('12)6.6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변경쟁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임

구분	한국	일본	싱가폴	홍콩	대만	중국	인도
조세부담률('10년, %)	19.3	16.3	13.1	13.9	11.9	18.2	16.5

- (조세구조) OECD평균에 비해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임

<주요국의 GDP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10년, %)>

구분	소득 과세			재산 과세	소비 과세	일반 소비세		사회보장 기여금
	소득세	법인세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 미 국	10.8	8.1	2.7	3.2	3.7	2.0	1.7	6.4
• 영 국	13.1	10.0	3.1	4.2	10.3	6.5	3.7	6.6
• 독 일	10.3	8.8	1.5	0.8	10.3	7.2	3.0	14.1
• 프 랑스	9.4	7.3	2.1	3.7	10.4	7.2	3.2	16.6
• 일 본	8.4	5.1	3.2	2.7	4.6	2.6	2.0	11.4
• 한 국	7.1	3.6	3.5	2.9	8.2	4.4	3.8	5.7
OECD 평균	11.3	8.4	2.9	1.8	10.4	6.9	3.5	9.1

## 2. 분야별 조세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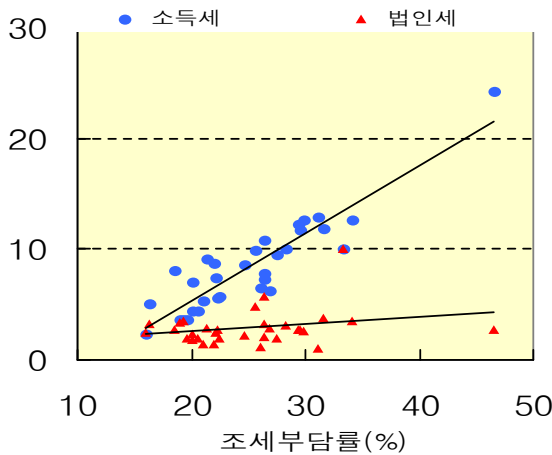
- (소득과세)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3.6%('10년)로서 OECD 국가(평균 8.4%, '10년) 중 매우 낮은 수준(32개국 중 30위)
  -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여전히 높고, 소득 공제 등으로 총급여의 약 63%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있음
    - \* 근로자 면세자 비율(%): ('07)43.8 ('08)43.2 ('09)40.3 ('10)39.0 ('11)36.1
  - 비과세·감면\*되는 금융상품이 많아 과세형평성 제고 필요
    - \* 금융소득의 34%는 비과세 또는 저율로 분리과세
  
- (법인과세)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3.5%('10년)로서 OECD 국가(평균 2.9%, '10년) 중 5번째로 높은 수준
  - 법인세는 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서 최고세율은 OECD평균(23.3%)과 유사하나 최저세율(10%)은 OECD 복수세율 11개국\*\*의 평균(17.1%)에 비해 매우 낮음
    - \* 과표구간별 세율(%): (2억원이하)10, (2~200억원이하)20, (200억원초과)22
    - \*\* 스페인 25%, 영국 20%, 일본 18%, 미국 15%, 프랑스 15% 등('12년 초 기준)
  
- (재산과세) 부동산 세제는 '高거래세·低보유세' 구조이며 양도 소득세는 높은 명목세율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 위축
  - 상속증여세는 세수기여도('12년 국세비중: 2.0%)에 비해 높은 누진세율(50%) 체계 등으로 인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큼
    - ※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일본 50, 영국·프랑스 40, 미국 35, 독일 30
  
- (소비과세) 부가가치세율(10%)은 OECD평균(18.7%, '12년)에 비해 낮고, 면세범위가 넓음
  - 에너지세의 경우 수송용 유류위주로 과세되어 에너지원별 조세 중립성을 저해하고, 주세는 고도주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 유류세의 세부담 수준(가격대비)은 OECD국가 중 낮은 수준(휘발유 19위, 경유 20위)
    - \* 주세율: (탁주) 5%, (약주·청주) 30%, (맥주·소주·위스키) 72%

### 3. 주요국의 조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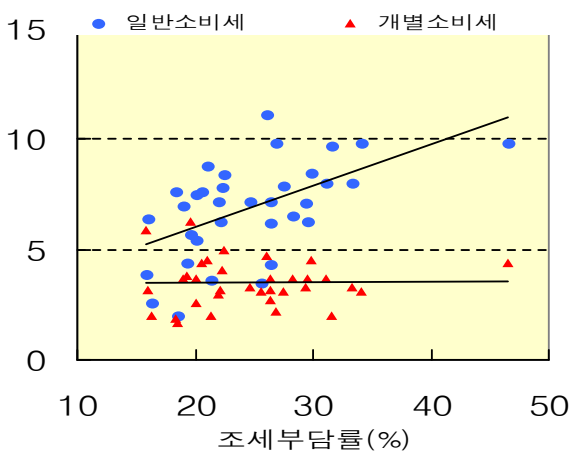
- (OECD 국가)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대중세목인 소득세 및 일반소비세 비중이 높은 경향

※ '10년 기준 OECD 국가는 총 조세수입의 44.4%를 소득세(23.9%), 일반소비세(20.5%)로 조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31.9%(소득세 14.3%, 일반소비세 17.6%) 수준

<GDP 대비 소득과세 비중('10년, %)>



<GDP 대비 소비과세 비중('10년, %)>



- (북유럽 복지국가) 높은 조세(36.0%, '10년)·국민부담률(44.6%)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OECD 최고수준의 복지수준 보장

- 高세율·低감면 체계로 대다수 국민이 부담하는 소득과세 비중 (20.2%, GDP 대비) 및 일반소비세 비중(9.0%, GDP 대비)이 매우 높음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최고세율 (% , '12년 ) >

구 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 평균	OECD 평균
소득세율 (지방세 포함)	60.2	49	40	56.6	51.5	42.5
부가가치세율	25	23	25	25	24.5	18.7

- (PIIGS 국가) 복지지출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조세 (22.8%)·국민부담률(33.0%)이 낮아 재정수지 적자 불가피

- 高세율 체계에도 불구하고 소득과세 비중(9.7%, GDP 대비, '10년), 일반소비세 비중(6.7%) 및 세부담 수준이 낮은 편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최고세율 (% , '12년 ) >

구 분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OECD 평균
소득세율	46.5	43	41	45	30.5	36.0
부가가치세율	23	21	23	23	18	18.7

## 4. 최근 주요국의 조세 동향

□ (OECD 국가)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 기업·우수 인력 유치,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기조 형성

○ 다만, '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확대

\* 소득세율: 5개국 인하, 12개국 인상, 17개국 유지('08년초→'12년초, 평균 +0.8%p)

\*\* 부가가치세율: 17개국 인상, 16개국 유지('08년초→'12년초, 평균 +1.0%p)

< '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소득·법인세율 변화(% , %p) >

구 분 (연초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부가가치세율				
	'00	'08	'12	'00 대비	'08 대비	'00	'08	'12	'00 대비	'08 대비	'00	'08	'12	'00 대비	'08 대비
한 국	40	35	38	△2	+3	28	25	22	△6	△3	10	10	10	-	-
OECD 평균	40.3	35.2	36.0	△4.3	+0.8	30.2	23.9	23.3	△6.9	△0.6	17.8	17.7	18.7	+0.9	+1

< '08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세율 변동 현황 >

구 분	소득세율(최고세율)			법인세율(최고세율)			부가가치세율		
	인하	인상	유지	인하	인상	유지	인하	인상	유지
국가 수	5 (14.7%)	12 (35.3%)	17 (50%)	13 (38.2%)	4 (11.8%)	17 (50%)	0 (0.0%)	17 (51.5%)	16 (48.5%)
세 율 변 동	+0.8%p ( '08, 35.2% → '12, 36%)			△0.6%p ( '08, 23.9% → '12, 23.3%)			+1.0%p ( '08, 17.7% → '12, 18.7%)		

□ (북유럽 복지국가) '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출축소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소득세\*·법인세\*\* 인하, 일반소비세는 유지

\* 소득세율 인하('08년초→'12년초, %): 덴마크(26.48 → 19.65), 핀란드(31.5 → 29.75)

\*\* 법인세율 인하('08년초→'12년초, %): 핀란드(26 → 24.5), 스웨덴(28 → 26.3)

□ (PIIGS 국가)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부가가치세\*\* 인상

\* 소득세율 인상('08년초→'12년초, %): 포르투갈(42→46.5), 그리스(40→45)

\*\* 부가세율 인상('08년초→'12년초, %): 포르투갈(21→23), 그리스(19→23), 스페인(16→18)

## II.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 성장잠재력, 인구구조, 기후·환경변화, 경제·사회적 격차, 통일대비 등 중장기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할 필요

① (잠재성장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투입 증가에 한계, 저축률 하락에 따른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KDI, %): ('11~'20) 3.8 ('21~'30) 2.9 ('31~'40) 1.9

○ 성장률의 둔화 및 과표양성화가 상당 수준 진행됨에 따라 고도 성장시기에 비해 세수증가율이 점차 하락할 전망

○ 특히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정과 일의 양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②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여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연금 등 복지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악화가가능성

\* 국가별 고령사회(7%→14%)소요연수(년): 미 73, 영 46, 프 115, 일 24, 한 17('00→'17)

\*\* 복지지출전망(조세연, GDP비중): ('10)8.9→('20)11.2→('30)14.4→('40)17.7→('50)20.8

○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도 점차 확대

③ (환경변화) 고유가 지속, 전력수요 증가 등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적응능력 배양 필요

④ (소득격차) '08년 금융위기시 악화되었던 소득격차는 경제회복과 함께 일자리 증가 등 '12년 들어 '07년 이전수준을 회복

※ 지니계수: ('06)0.306 ('07)0.312 ('08)0.314 ('09)0.314 ('10)0.310 ('11)0.311 ('12)0.307

○ 다만, 조세·이전지출 등 정책수단에 의한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8.4%('09년, '12년 9.2%)로서 OECD 주요국('00년대 후반)\*에 비해 미흡

\* 미국 15.2%, 뉴질랜드 18.6%, 일본 25.3%, 캐나다 26.0%, 영국 34.6%

⑤ (통일대비) 분단상황을 감안하여 통일대비 재정여력 확보 필요

※ '90년 통독과정에서 국민부담률이 2%p 내외 증가: ('90)34.8%→('92)36.9%

### Ⅲ.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正常化)”

#### ①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12년 20.2%→'17년 21% 내외)
  - 다만, 세율인상·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
- ※ 추가재원 필요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

#### ② 조세구조의 정상화

-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
  - (소득과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부담’ 구조로 전환
  - (소비과세)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세제개편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 교정
  - (법인과세)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체계 마련
  - (재산과세)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를 추진하고 富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

#### ③ 조세지원의 효율화

- 조세지출제도는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몰도래 제도는 종료하되 필요시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
- 조세지출-세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



## IV. 세목별 조세정책 운용 방향

### 1. 소득·금융과세 제도

- (현황)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3.6%, '10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32개국 중 30위, OECD 평균 8.4%)이며,
  - 각종 비과세·공제로 인해 근로소득의 약 37%만 과세 대상
  - 면세자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11년 36.1%로 여전히 높음
  - \* 근로자 면세자 비율(%): ('07)43.8→('08)43.2→('09)40.3→('10)39.0→('11)36.1

< 주요국의 소득세수 비중('10년) >

구분	OECD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GDP대비(%)	8.4	10.0	8.8	8.1	7.3	5.1	3.6
총조세대비(%)	23.9	28.8	24.5	32.8	17.0	18.6	14.3

※ 자료원: OECD Revenue Statistics('12)

- (기본방향) 공제제도 합리적 조정, 비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 전환 등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상화
  - GDP 대비 소득세 비중 합리화 및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세기반 확대 및 각종 공제제도 정비를 추진
- 주요 추진 과제(예시)

주요과제

- 소득세 과세기반확대 (과세사각지대 해소 및 면세자 비율 축소)
-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지속 추진
-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및 실효성 강화
- 금융소득(저축, 펀드, 채권 등)에 대한 과세제도 선진화
-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 검토

## 2. 법인과세 제도

- (현황)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3.5%, '10년)은 OECD 국가 (평균 2.9%) 중 5번째로 높은 수준

< 주요국의 법인세수 비중('10년) >

구분	OECD	한국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GDP대비(%)	2.9	3.5	3.2	3.1	2.7	2.1	1.5
총조세대비(%)	8.6	13.9	11.6	8.8	10.8	5.0	4.2

※ 자료원: OECD Revenue Statistics('12)

- 법인세율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3단계 누진세율\*로 운영 중

\* 법인세 세율구간: 과세표준 2억원 이하(10%), 2~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

※ OECD국가(34개) 중 22개국은 법인세가 자본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율을 단일세율(flat rate)로 운영

- (기본방향)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 세부담 수준 등 성장친화적 조세체계를 유지

-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추진

- 주요 추진 과제(예시)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성장·퇴출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li> <li>▪ 투자·R&amp;D에 대한 세제지원 등 잠재성장률 제고 유도</li> <li>▪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및 구조조정 세제의 지속적 보완</li> <li>▪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li> </ul>
-------	------------------------------------------------------------------------------------------------------------------------------------------------------------------------------------------------

### 3. 재산과세 제도

- (현황) 재산세의 GDP 대비 비중(2.9%, '10년)은 OECD 국가 (평균 1.8%) 중 7번째로 높은 수준

< 주요국의 재산세 비중('10년) >

구분	OECD	영국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	독일
GDP대비(%)	1.8	4.2	3.7	3.2	2.9	2.7	0.8
총조세대비(%)	5.4	12.1	8.5	12.8	11.4	9.7	2.3

※ 자료원: OECD Revenue Statistics('12)

- (세율구조)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6~38%)로 과세하되,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50·60%), 단기양도 중과(40·50%) 등 운영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서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영국·프랑스 40%, 미국 35%, 독일 30%

- (기본방향)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를 추진하고 富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 합리화

- 주요 추진 과제(예시)

- |      |                                                                                                                                                                                 |
|------|---------------------------------------------------------------------------------------------------------------------------------------------------------------------------------|
| 주요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기본세율로 전환하고 감면제도를 합리화</li> <li>▪ 상속증여세 세율 적정화 및 공제제도 개편, 재산 평가방법 개선</li> <li>▪ 거래세 완화·보유세 적정화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li> </ul> |
|------|---------------------------------------------------------------------------------------------------------------------------------------------------------------------------------|

## 4. 소비과세 제도

- (현황) 일반소비세의 GDP 대비 비중(4.4%, '10년)은 OECD 평균(6.9%)보다 낮은 편이나, 개별소비세의 GDP 대비 비중(3.8%)은 OECD 평균(3.5%) 수준

< 주요국의 소비세 비중 (GDP 대비, '10년) >

구분	OECD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	일본	미국
일반소비과세(%)	6.9	7.2	7.2	6.5	4.4	2.6	2.0
개별소비과세(%)	3.5	3.2	3.0	3.7	3.8	2.0	1.7
합계	10.4	10.4	10.2	10.2	8.2	4.6	3.7

※ 자료원: OECD Revenue Statistics('12)

- 부가가치세율(10%)은 OECD 평균(18.7%)에 비해 낮고\*, 면세 범위가 넓음
  - \* 부가가치세율은 '77년 이후 35년간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음
- 에너지세제의 경우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되어 에너지원별 조세중립성을 저해
- (기본방향)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면세·감면 정비 등으로 세입기반 확충
  - 고가사치재를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 교정

### □ 주요 추진 과제(예시)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금융용역, 학원, 의료 과세범위 확대)</li> <li>▪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li> <li>▪ 개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 조정</li> </ul>
-------	---------------------------------------------------------------------------------------------------------------------------------------------

## 5. 국제조세·협력 분야

- (현황)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고정사업장 등 현행 국제조세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
  -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제공조\*\* 필요성 증가
    - \* 이전가격 세제, 과소자본 세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제도의 지속적 보완 필요
    - \*\*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 확대 필요(현재 조세피난처 50개국 중 15개국과 정보교환 가능, 16개국은 발효절차 진행중, 19개국과는 체결 추진중)
- (기본방향)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 국제조세 환경변화와 소규모 개방경제 등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적합한 국제조세모델 정립
  - 역외탈세,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 기준 도입 등 국제조세제도를 선진화
  - 조세조약정보교환협정 체결확대 등 국가간 협력·공조 강화 추진
- 주요 추진 과제(예시)

주 요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선진화</li> <li>▪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협정체결 확대</li> <li>▪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li> <li>▪ 거주자 판정 기준 보완</li> </ul>
------------------	-------------------------------------------------------------------------------------------------------------------------------------------------------------

## 6. 관세·FTA 이행 분야

### <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

- ◆ (세계경제 중심축 이동) 미국·EU 등은 저성장에 직면한 반면, 중국·인도 등 신흥국은 빠르게 부상
- ◆ (거대경제권 통합논의) 미국·EU·일본 등이 주도하는 거대 FTA 논의 활발
  - \*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역통합형 FTA 추진
- ◆ (글로벌 분업 확대) 신흥국·선진국 간 부품공급 및 완제품생산 거래가 복잡·다양하게 전개

□ (현황) '13.6월 현재 10건의 FTA가 체결\*되고 개방확대를 위한 신규협상을 추진중이나, FTA 활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

\* 기발효 9건(미국, EU, 아세안 등), 발효 준비 1건(콜롬비아), 협상중 6건

\*\* FTA활용률(수출, '13.5월기준): 한-미 75.0%, 한-EU 80.0%, 한-아세안 35.2%

□ (기본방향) FTA 확대 등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본 관세율 체계 개편, 관세환급 정비, FTA 활용률 제고방안 등 추진

○ 전자상거래·특송물품 등 새로운 거래형태 증가에 따라 제도 개선

□ 주요 추진 과제(예시)

주 요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제도 선진화</li> <li>▪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검토</li> <li>▪ 관세환급제도 합리화</li> <li>▪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체계 개편</li> </ul>
------------------	--------------------------------------------------------------------------------------------------------------------------------------------------------------------

## ⑦ 기타 분야

- (현황) 총조세 중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약 8:2 수준이나, 지방 이전재원을 감안한 「중앙 대 지방」 세출구조는 약 4:6 수준

(단위: 조원, %)

구 분		'08	'09	'10	'11	'12
세입 비중	총조세	212.8	209.7	226.9	244.7	257.0
	국세 (비율)	167.3 (78.6)	164.5 (77.7)	177.7 (78.3)	192.4 (78.6)	203.0 (79.0)
	지방세 (비율)	45.5 (21.4)	45.2 (22.3)	49.2 (21.7)	52.3 (21.4)	54.0 (21.0)
세출 비중	중앙	38.6	35.5	38.8	38.6	38.7
	지방	61.4	64.5	61.2	61.4	61.3

- (조세체계)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목적세가 다양한 세목에 부가되어 조세체계가 복잡
- (세법 새로 쓰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작업을 단계별로 진행
  - (1단계) '11년부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새로 쓰기 추진 중\*
    - \*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13.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금년 국회 제출 예정
  - (2단계) '14년부터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로 쓰기 추진 예정
- (기본방향) 중앙·지방간 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
  - 목적세 정비, 세법 새로 쓰기 등을 통한 조세체계 간소화 추진
- 주요 추진 과제(예시)

주 요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방 자원중립원칙 하에 국세와 지방세 간 조정 검토</li> <li>▪ '세법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지속 추진</li> </ul>
------------------	----------------------------------------------------------------------------------------------------------------------------